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10. 2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89호로 2021년 10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 의료관광 관련 사업 추진 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근거 조문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료관광 활성화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10조)

- 의료관광객 유치 및 관리, 사업의 기획 및 연구, 홍보·마케팅 등 수행

나. 센터의 인력 배치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10조의3)

- 활성화센터 및 안내센터에 필요인력 선발·배치 가능

다.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문 내용 개정(안 제14조)

- 지원대상을 의료·보건·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

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문 내용 개정 및 신설(안 제17조)

- 위탁대상을 의료·보건·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
- 활성화센터 운영 업무 위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1. 9. 9. ~ 9. 29./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참고로 스마트메디컬특구는 2017년 12월 중소기업벤처부장관 으로부터 지정받은 후 지역 내 풍부한 의료자원과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기반 시설 조성, 의료관광과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왔으며 2020년에는 지역 특화발전 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상을 수상한 바 있음.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0조에서 의료관광활성화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우리 구가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지정받은 후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성과를 달성해온 부분도 있으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의료관광시장이 급변하고 변화된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 대비하여 의료관광 특화도시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음. 이에 집행부에서는 전담기관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 및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유사한 센터는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 4개의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전담기관은 아직 없는 실정으로 우리 구와 같이 구청이나 보건소에 팀의 형태로 직원 2~3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활성화센터의 업무를 의료관광객 유치 및 관리, 의료관광 사업의 기획, 연구 및 수행, 의료관광 관련 통계·정보의 수집 및 관리, 홍보·마케팅 등으로 규정하고 제10조의3을 신설하여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선발·배치할 수 있게 하였음.

- 안 제14조의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대상을 현행 의료기관, 유치업자 외에 의료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의료, 보건,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안 제17조의 업무의 위탁 대상 또한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서 의료·보건·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으로 확대하였음.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종합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자구 등에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조례의 제정)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폐지하는 조례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및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특화특구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

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를 평가하고 그 결과 일정 수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 2.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그 밖의 의료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국내외 의료관광 홍보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 2. 관광·쇼핑 등과 연계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
- 3.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 4.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추진사업
- 5.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